

-서울특별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

구성 및 운영 조례안 조례안-

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8
----------	---

2006. 9. 15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 경위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8월 28일 중구청장 제출
나. 회부 일자 : 2006년 9월 5일 회부
다. 상정일자 : 제13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
(2006. 9. 15) 상정·심사·의결

2. 제안 설명

- 제안설명자 : 도시관리과장 김길남

◇ 제안이유

2006. 2. 24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 중에 발생되는 입주자· 사용자· 관리주체의 분쟁 등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· 운영하여 공동주택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.

◇ 주요골자

가. 위원회의 구성(안 제3조)

-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
※ 부구청장(위원장) 및 도시관리국장(부위원장), 입주자대표회 추천인
관리주체 추천인, 시민단체 추천인, 주택관리분야 경험자, 구 고문변호사

나. 위원회의 주요 기능(안 제4조)

-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·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·선임·해임· 임기에 관한 사항
- 자치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
- 관리비·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·사용 등에 관한 사항
- 공동주택(공용부분에 한함)의 유지·보수·개량 등에 관한 사항
-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

다. 분쟁의 조정신청(안 제9조)

-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제출
-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

라. 조사 및 의견청취(안 제10조)

-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열람·복사 및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고
- 당사자 및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들을 수 있음

마. 조정의 효력(안 제12조)

-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내용 수락시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김인자) : 별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생략 -

5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